



월동기 등유수급안정 조정명령

- 동력자원부 -

동력 자원부는 지난 9월 29일 금년 월동기중의 등유수급안정을 위해 석유사업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10월부터 내년 3월말까지 6개월간 등유제품규격을 완화하고, 정유사별로 책임확보물량을 지정하는 내용의 조정명령을 발동했다.

이 조정명령은 등유의 생산收率을 6%에서 6.5%로 상향조정해 국내생산량을 약 1백30만배럴 정도 늘리고 정유사별로 월별 책임확보물량을 지정하는 한편 월동기중 최저 23일에서 40일분의 재고수준을 항상 유지토록 했다. 또 등유제품의 규격을 완화, 황분은 0.08%이하에서 0.13%이하로, 연점은 21mm 이상에서 18mm 이상으로, 그리고 색은 +21세이볼트 이상에서 +18세이볼트 이상으로 각각 조정했다.

한편 동자부는 민생용 유류인 경유와 저유황 B-C 油에 대해서도 생산 및 수입물량의 확보와 적정재고유지로 월동기중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정유사에 지시했다. 동자부는 이밖에 최근 중동사태로 국제유가가 2배이상 급등하는 점을 감안하여 소비자의 등유소비절약과 주난방용으로 사용되는 보일러에 경유사용을 권장하고 단독주택 대용량 보일러에는 등유보다 국내생산과 수입이 용이하고 국제가격이 싼 경유를 반드시 사용해 주도록 당부했다.

금년 월동기 등유수요는 작년보다 70% 증가한 2천5백만배럴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52%가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나, 최근 중동사태로 인해 해외공급물량이 크게 부족, 국제가격이 폭등하고 물량확보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석유사업법 제17조는 석유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했을 경우 동자부장관이 ▲석유정제시설의 가동 및 조업에 관한 조정 ▲석유정제업자의 유종별 생산비율에 관한 조정 ▲석유의 유통구조 및 유통경로에 관한 조정 등을 석유정제업자, 수출입업자, 판매업자들에게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되어 있다.

월동기 등유등 민생유류 수급안정을 위한 특별조치

1. 당부에서는 국민소득향상과 국민의 편의성 추구로 최근의 등유 수요급증에 대처 주로 민생용유류로 사용되는 등유의 월동기중 수급안정을 위하여 '90. 6. "월동기석유수급종합대책"을 마련 귀사의 적극적인 협조로 대처해 왔으나, '90.8.2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야기된 최근의 중동사태로 인한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제품수출 중단으로 월동기중 수입수요의 52%를 수입해야 하는 우리로서는 금년 월동기중 등유수급 물량의 확보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2. 이러한 등유수요급증 추이와 최근의 국제석유제품시장의 급변을 감안시 월동기중 등유수급안정을 위하여 석유사업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각 정유사에 다음과 같이 등유규격 조정, 등유생산, 책임확보물량 등에 관한 수정명령을 발하니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등유등 수급안정 특별명령

(1) 석유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명령 발령사항

가. 등유규격 조정

석유사업법 제18조의 2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2항에 의한 시행규칙 별표2의 등유규격중 황분, 연점, 색(셰이볼트)을 '90.10.10~'91.3.31간 아래와 같이 조정.

	현 행	조 정
황분 (%)	0.08이하	0.13이하
연점 (mm)	21이상	18이상
색 (셰이볼트)	+21이상	+18이상

나. 정유사별 등유책임 확보 공급의무

• 각 정유사는 '90.10~'91.3월중 매월 최소한 등유생산

(단위: 천배럴)

	油 公	湖 油	京 仁	雙 龍	極 東
1990. 10	1,461	926	393	280	260
1990. 11	1,876	1,189	504	361	334
1990. 12	2,026	1,284	544	389	361
1991. 1	2,238	1,419	602	430	398
1991. 2	1,845	1,170	496	333	328
1991. 3	1,605	1,018	431	329	286

* 각사별 10월초 재고는 월동기 계획상의 총재고 (3,503천배럴)를 월동기 평균수요비율대로 적용.

수율을 실제 제품생산의 6.5%이상 유지하는등 국내생산 비율을 높이고 등유의 생산, 제고변동, 수입, 타정유사로부터의 순유입물량 합계가 월별로 아래수량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만 이수확화에 대한 공급물량은 제외됨.

다. 京仁지역 등유재고 유지의무

정유사는 '90.10.8~'91.3.31간 매일 경인지역 저유소의 재고수준을 당일 출하물량 기준으로 3일분 이상 유지할 것.

3. 또한 월동기중 민생용 유류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지시사항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동 지시사항이 이행되지 않거나, 양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조정명령을 발동할 계획이오니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민생유류수급안정을 위한 행정지시사항

가. 등유수급계획 및 실적보고

- 매월 등유수입계획을 해당월 10일전까지, 매월실적을 익월 10일까지 당부에 보고할 것.
- 동 조정명령에 의한 월별 생산, 수입등 물량확보 계획을 10.10까지 당부에 제출할 것.

나. 민생용유류인 경유와 저유황 B-C油도 수급 29220-4331('90.6.27)호로 통보한 "월동기석유수급 종합대책"에 회사별로 제시된 물량이상으로 각사가 생산, 수입물량확보, 제고유지로 수급에 차질이 발생치 않도록 할 것. 특히 경유의 경우 등유수요의 호환성이 있으므로 등유수요 추이와 경유수요 추이를 면밀히 분석하여 경유수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

**부존자원 적다말고
낭비풍조 반성하자**